

2023년 제3차 기록물공개심의회 회의록 - 공개용 -

2023년 12월

2023년 제3차 기록물공개심의회 회의록

〈회의 개요〉

◆ 일 시 : 2023. 12. 18.(월) 16:00~18:00

◆ 장 소 : 서울기록원 5층 컨퍼런스룸

◆ 참 석 : 9명

- 위촉위원(4): 이상미(위원장), 김성순, 김희란, 강성국
- 내부위원(3): 윤정훈(기록정책과장), 유숙현(보존서비스과장), 권영규(운영지원과장)
- 배 석 자(2): 김은아(간사), 김지혜(열람담당)

◆ 안건 및 회의 결과

일련번호	심의(보고)안건	검토의견	의결내용
2023-5 (심의)	'23년 제2차 기록물 공개재분류 검토 결과	○ 생산부서 비공개연장 요청 기록물 공개값 검토 - 전략산업기반과(5건) ⇒ 공개 - 도시철도과(2건) ⇒ 공개(1건), 부분공개 6호(1건) · 비공개대상정보: 주민등록번호 - 교통지도과(5건) ⇒ 공개 - 문화정책과(102건) ⇒ 부분공개 6호 · 비공개대상정보: 생년월일 중 월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본적	가결
2023-6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기록 공개 범위(재심의)	○ 도시계획위원회 기록 공개 범위 - (30년 경과 기록물) · 회의록(회의개요, 참석위원명단, 발언자명): 공개 · 안건, 심의자료, 심의결과: 공개 - (30년 미경과 기록물) · 회의록(회의개요, 참석위원명단): 공개 · 회의록(발언자명): 비공개(사안별 검토) · 안건, 심의자료, 심의결과: 공개 ○ 도시계획위원회 기록 공개 방식 - 청구인이 요청하는 방식으로 제공	수정 가결

□ 주요 발언 내용

▶ 개회

<위원장>

- 반갑습니다. 위원장 이상미입니다. 지금부터 서울기록원 2023년 제3차 기록물공개심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전체 7명의 위원 전원 참석으로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 오늘은 안건이 2개이며,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별로 간사가 안건 및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 의견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시고 회의 종료시 의결서 확인 및 서명을 통해 회의가 마무리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는 첫 번째 안건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1: '23년 기록물공개재분류 검토 결과> 심의

<간사>

- 안건1 설명 ※ [붙임1] 안건자료 참고
- 사전 검토 의견을 세 분 위원님께서 주셨는데요.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세분 모두 기록원의 검토의견과 동일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장>

- 첫 번째 안건과 관련하여 질문 사항이나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4개 부서 중 문화정책과의 경우 서울 문화상 수상자 카드와 신원조사의회 기록 모두 비공개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정책과 기록관리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적, 생년월일과 같은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한 부분이 걱정되면 비공개가 아닌 부분공개로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 근데 저는 서울문화상을 받는 분들이 대부분 유명한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검색했을 때 생년월일 정도는 공개되어도 될 것 같다고 의견을 드렸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생년월일 중 월일은 비공개 정보로 제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위원>

- 수상자 명단에 본적을 필수로 넣어야 하는건니까?

<간사>

- 본적 같은 경우 모든 카드에 적혀 있지는 않았습니니다. 일부 기록에만 적혀 있고, 본적도 읍면동까지 나온 것은 아니고, 시도 단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원>

- 그럼 본인이 작성유무는 정할 수 있나요?

<간사>

- 현재 공개재분류 대상이 된 것은 예전에 관리되던 카드인데요. 모든 항목을 채우면서 관리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

- 요즘에도 표창 공적조서를 쓸 때 본적을 적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형식을 계속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 위원>

- 최종 검토의견상으로는 본적과 전화번호, 생년월일중 월일은 제외하는 취지이신가요?

<간사>

- 저는 생년월일은 월일까지 모두 공개되어도 된다는 의견인데요. 부서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어서 심의회에서 논의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해당부서에도 심의회 심의를 통해 생년월일의 경우 공개로 전환될 수도 있지만 공개로 전환된다고해서 바로 원문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고 최소 한번 이상의 검토를 거친 후 제공한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 위원>

- 그동안 서울기록원 기록물공개심의회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성명은 '성00', 생년월일은 비공개로 의결을 했었는데, 문화상 수상자가 유명한 분들이기는 하지만 생년월일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기존의 서울기록원 공개범위보다 더 확대되는 것 같은데, 부서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관철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해당 기록에 기록된 주민등록번호를 보면 20년대생으로 생존해계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개인정보 침해라고 볼 수 없고, 그렇다

고 생존여부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궁금합니다. 서울기록원에는 개인정보가 있는 문건들이 굉장히 많을텐데 이런 사항에 대해 계속해서 판단을 하려면 공개기준이나 프로세스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연령상으로 미루어 보아 사망으로 추정되는 분들에 대한 공개 기준 또는 업무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비밀 기록의 경우 보호기간이 지정되어 있고 보호기간이 지나면 일반문서로 재분류 되는 절차가 있는데, 개인정보같은 경우는 어떤식으로 절차나 기준을 마련해야 할지 궁금하거든요. 그것과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에는 프로세스가 있나요?

<간사>

- 국가기록원의 경우에도 개인정보에 대해 딱 몇 년이 지나면 공개라는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가기록원에서 저희 열람담당자에게 서울기록원은 50년이 지나면 공개를 하는지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 위원>

- ○○○ 위원님과 똑같은 고민을 하다가 서울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에 적힌 개인정보를 봤을 때, 50년 정도 경과한 기록에서의 개인정보 당사자는 90세 이상이 되셨을 것 같고, 그렇다면 공개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면서 50년을 기준으로 삼아보려고 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어려움이 있어서 성명같은 경우는 ‘김00’으로 표기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정하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 위원>

- 변호사님들께서 더 잘 아는 문제일 것 같기도 한데요. 성명 정도의

사항은 북미 같은 국가에서는 엄격하게 비공개 대상으로 정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우리 나라에서는 비공개를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 위원>

- 대부분의 기관들은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선호하는데 개인정보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 더 조심하는 게 있어요. 혹시나 당사자가 살아 있을까봐 걱정하는 부분, 침소봉대해서 확대해석하고,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 위원>

- 신원조사 의뢰 기록은 공적조회를 위한 것인가요? 근데 문화상 수상자 관리 카드인데 개인정보라고 전부 다 비공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 위원>

-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 신원조사의뢰 기록의 경우 정보를 모은 취지가 나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절하지 못한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인데 아무리 기록원이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보면 수집하지 않아도 될 정보까지 수집한 것을 모두 공개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 위원>

- 신원조사의 결과가 아니라 의뢰자의 명단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포함된 정보가 그냥 단편적인 개별적인 정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위원>

- 기록원은 생년월일 모두 공개하자는 의견이고, 생산부서에서는 생년
까지만 공개하자는 의견인가요?

<간사>

- 저는 서울 문화상 수상자 카드는 생년월일까지 공개해도 된다고 생각
하고 신원조사 의뢰도 여기 의뢰자 명단에 있는 내용을 모두 공개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해당부서에서는 보직책, 대표라는 것
도 비공개 정보로 의견을 주셨어요. 대표의 성명은 공개정보라고 말씀
을 드렸더니 이 당시에 이분이 이 약단이나 이 극단의 대표였다는 게
혹시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시면서 저 부분도 좀 가려줬
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 위원>

-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문제인가요? 단순한 우려인거죠?

<간사>

- 네. 맞습니다.
- 공연자등록 관련한 기록이 저희 공개 재분류 대상에 있기는 했었는데
요. 공연자 등록이 무엇인지 검색을 해봤더니 저 문화가 일제시대 때
공연하는 사람들을 관리 통제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등록된 사람만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더라고요. 정확한 시점이 기억나진
않지만, 일제 시대의 잔재라고 해서 지금은 폐지된 제도인데요. 그때
신원조사 의뢰를 했던 자료인 것 같습니다.

<○○○ 위원>

- ○○○ 위원님 말씀처럼 개인정보 관련 기록의 공개 기준을 50년 이
상은 공개 이런식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

고 기록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사>

- 사실 저희도 50년이든, 70년이든 기준만 있다면 기록을 제공할 때 판단하기 편할텐데 사안마다 검토를 해야해서 업무부담이 좀 크기는 하거든요. 도시철도과 기록의 경우에도 비밀열람기록전에 대해 부서에서는 비공개 연장 요청을 하셨는데요. 그 중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부분공개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주민등록번호중에 11년생분들도 계세요. 그런 경우 (110세가 넘었는데) 비공개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록원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이 다른데요. 아무리 돌아가신 분이라고 해도 유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공개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많아서, 저희가 어떻게 기준을 딱 정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 50년으로 기준을 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 어린이들도 아동복지 관련해서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성인 대상으로 단순하게 더하기 50 이렇게 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

-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다시 좀 생각해보면 기준이 명확해야 판단이 정확할 것 같은데 기준 같은 게 사실은 좀 불확실하고 또 그렇다고 사망이라는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그걸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생년월일이나 주민번호가 크게 가치 있는 정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공개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어

요.

<○○○ 위원>

- 생년월일, 주민번호, 본적은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거죠?

<○○○ 위원>

- 네.

<○○○ 위원>

- 네. 저도 동의합니다.

<○○○ 위원>

- 신원조사 의뢰 공문에 있는 보직처, 보직책은 공개하고, 생년월일은 비공개 의견인데 공개를 했을 때의 이익과 비공개 했을 때의 이익이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고, 법적기준을 벗어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 위원>

- 안건자료를 보면 서울문화상 수상자 명단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비공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간사>

- 네. 맞습니다.

<○○○ 위원>

-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은 그동안 기록물공개심의회에서 의결된 공개기준과 다른 기준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성명도 ‘김00’이라고 정

했으면 계속해서 같은 기준으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 위원>

- 연구자가 어떤 한 인물을 연구할 때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는지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적 아니면 생년월일 등으로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생년월일까지 아니라도 생년정보는 공개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직처, 보직책 같은 경우는 이미 공개된 정보들을 통해서 추적하면 확인이 가능하니까 업무의 연속적으로 일관성있게 추진하려면 비공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비공개함으로써 공익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면 동일 기준으로 의결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혜 주무관>

-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홈페이지나 다른 검색사이트에 공개가 되어 있는 정보인데, 서울기록원이 비공개할 경우 이의신청이 들어와요. 그래서 서울문화상 수상자 카드 같이 시 홈페이지에서 공개한다면 저희도 공개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간사>

- 현재 공개되는 명단을 보시면, 성명, 수상분야, 공적사항, 직위 등이 공개되어 있고, 이분들이 대부분 유명한 분들이기 때문에 검색을 했을 때 생년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 위원>

- 네이버 인물정보에 뜨는 것을 말씀하시는건가요?

<간사>

- 네. 맞습니다.

<○○○ 위원>

- 수상한 분들이 유명인이기는 하지만 검색포털과 연동되어 있다고해서 공개된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검색포털에서는 본인이 원하는대로 개인정보를 올리고, 가릴 수 있어요.

<○○○ 위원>

- 현재 서울시에서 올리는 서울문화상 수상자명단에는 생년월일은 공개되어 있지 않네요.

<○○○ 위원>

- 70년대~80년대 명단에는 생년월일이 공개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위원>

- 상을 받는 분들이 유명하시더라도 모든분의 생년월일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 위원>

-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수상을 하는 분들은 상을 받을 위해 공적조서도 쓴 분들일텐데, 본인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은 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개를 한다고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안건자료에서 보는 것 같이 이미 공개되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개인정보라고 하여 비공개할 필요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전과기록 조회라든지 어떤 사생활 침해와 같은 피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이 사람의 공적을 나타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당사자를 특정해 줄 수 있는 생각으로 생년월일 정도는 기재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신원 조회 의뢰도 공문도 조사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의뢰를 한다는 것 그 자체이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 대상이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 검토 의견을 봤을 때 서울문화상 수상자명단을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으므로 비공개 대상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쓰여 있어서 홈페이지에도 생년월일이 공개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생년월일은 네이버 인물사전 등에 있다고 하시는거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하지만 다시 생각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 위원>

- 검색포털에 공개되어 있다고해서 그 정보를 공적으로 공개된 정보라고 말하기는 좀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 개인 정보가 결국에는 정보 주체가 문제시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서울기록원이라는 공공기관에서는 문제 제기 대상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 이거든요. 문제 제기가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개인정보라도 공개해도 상관없다고 하거나, 민감한 자료니까 공개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자의적으로 판단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위원>

- 사실 사생활 침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사생활을 본인이 스스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 위원>

- 누군가가 서울기록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왜 지키지 않았냐고 물었을 때, 이것은 공개를 해도 문제 제기가 들어오지 않을 정보라고 대응하는 것은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문제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안은 조금 논의를 해봐야할 것 같아요.

<○○○ 위원>

- 정보를 수집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과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도 바로 알려주던 시절로 자기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이 없을 시절에 수집된 정보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관점으로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사망하지 않은 사람의 생년월일 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서울기록원에서는 그런 부분을 가볍게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저희가 토론한 것처럼 이 정보 자체가 오래된 기록물이고, 기록물의 성격상 상을 수여하기 위해서 생산된 정보라서 민감성은 낮기는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는 보편적이고 획일적인 업무 절차와 합법성 같은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생년월일을 공개함으로써 공익적으로 얻는 것보다 서울기록원의 리스크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서울기록원에서 사망 상태가 확실하신 분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정도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 위원>

- 생산부서에서도 생년은 공개하고, 월일은 비공개 하는 것으로 의견을 주셨다는거죠? 근데 서울기록원 의견은 월일까지 모두 공개하자는 의견이고요.

<○○○ 위원>

- 생산 부서에서는 생년까지는 같이 합의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간사>

- 네. 그 부분은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말씀드리고 확인했습니다. 올해 재분류 대상인 서울문화상 수상자 카드는 안건에 첨부해드린 것과 같이 생년까지만 적혀 있는 게 대부분인데, 간혹 몇 분의 카드에 월일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 위원>

- 이제 의견을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전 검토의견에서 기록원 의견에 동의한다고 하였습니다.

<○○○ 위원>

- 저도 성명과 생년을 접목한다고해서 누군가를 특정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생년까지는 공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저도 생년까지 공개하는 것은 동의하고, 그 외에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의견드립니다.

<○○○ 위원>

- 저도 생산부서의 의견대로 생년을 공개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 위원>

- 유명인들은 보통 생년 정도는 기사에 써주는 경우가 많고, 동명이인을 구분하기 위해서 생년까지 공개하는 것이 서울기록원에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부서 의견대로 생년월일 중 생년까지만 공개하고 월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적은 비공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 전원>

- 네. 동의합니다.

▶ <안건 2: 도시계획위원회 기록 공개 범위> 심의

<위원장>

- 두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도시계획위원회 기록 공개 범위 재심의에 대한 안건입니다.
간사님께서서는 사전 검토 의견과 심의 안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안건2 설명 ※ [붙임1] 안건자료 참고
- 안건2에 대해 사전 검토 의견을 세 분 위원님께서 주셨는데요. 두 분 위원님은 기록원의 검토의견과 동일하다고 의견을 주셨고, ○○○ 위원님께서서는 심의자료 및 결과, 회의록의 회의 개요, 참석 위원 명단, 발언자명까지 공개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부 공개 이유는 ‘위원회 위원이면 본인의 심의내용에 책임을 져야 하고, 이것이 사생활 침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촉되면, 이권이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책임성을 강화해야 하며, 위원 선정 시 발언자명이 공개 사항임을 미리 공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기록의 공개 방식은 ‘직접 열람 또는 종이출력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는 질문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지난번 회의 결과랑 이번 재검토 의견이랑 동일한 건가요? 전 동일하다고 이해를 했거든요.

<간사>

- 달라진 부분은 작년에 심의했던 30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록물의 경우 참석위원 명단도 비공개였는데요. 이번 검토 의견에서는 공개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난 공개심의회에서는 30년 경과기록과 30년

미경과 기록을 별도로 심의하였고, 심의결과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심의회를 준비하며 생산부서에 유선으로 확인하였을 때, 생산부서에서는 30년 경과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비공개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30년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검토의견을 드렸습니다.

- 올해 공개재분류 대상 중 도시계획위원회 기록은 70년대, 80년대 생산된 것입니다. 생산부서 담당자에게 70년대, 80년대 기록도 비공개를 원하시는지 질의하니, 연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비공개라고 하였습니다.

<○○○ 위원>

- 일단 30년이 경과한 기록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법에 정확히 있기 때문에 생산부서 의견을 따를 수는 없고, 30년이 미경과 된 기록물에 대한 공개여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심의회때는 워낙 도시계획이 오래 걸리는 사안이다보니 10년이 지나도 현안인 경우가 있어서 참석위원 명단과 발언자명은 비공개로 의결했던 것 같습니다.

<간사>

- 네. 30년 미경과 기록물의 경우 지난 심의회때는 참석위원명, 발언자명 모두 비공개였는데, 이번에는 참석위원명은 공개, 발언자명은 비공개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 위원>

- 오늘 심의회에서는 30년이 경과 된 도시계획위원회 기록에 대해서 다시 의결을 하면 되나요?

<간사>

- 네. 맞습니다.

<○○○ 위원>

- 30년 경과된 기록물이 외부로 제공된 적이 있나요?

<김지혜 주무관>

- 네.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관련한 기록은 열람 요청이 많습니다.

<○○○ 위원>

- 30년이 경과된 기록물은 이미 발원자명도 공개로 의결하고 기록도 제공되었는데 지금 다시 비공개로 바꾸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 위원>

- 사전검토 의견에서는 기록원 검토 의견에 동의한다고 의견을 드렸는데, 이 재검토 의견이 30년 미경과에 대한 것으로 알았어요. 30년 경과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 30년 경과 기록은 ○○○ 위원님과 같이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생각이구요.
- 정보 공개와 관련된 사건 하면 제일 문제 되는 것이 회의록이거든요. 회의록이 생산된 지 10년 미만인 경우 재판을 하면 보통은 공개는 하되 발원자만 가리자는 식의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발원자 명단은 공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도 비공개인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건 보통 그 회의관련 사안이 끝나면 공개로 풀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생산부서 입장이 이해는 되지만, 재판이 있을 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30년이 넘으면 모두 공개가 맞다고 생각하고, 3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정보 공개 판례들에 근거해서 발언자들은 특정이 되지 않는 선에서 가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록원에 30년 미경과 기록은 아직 없나요?

<간사>

-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경과하였으나, 30년이 미경과된 기록은 올해 공개재분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니다. 근데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30년 미경과에 대한 부분도 오늘 의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도시계획위원회 기록 관련해서 심의회에 올릴 수는 없어서요. 오늘 함께 결정하는 게 기록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공개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30년 경과 여부에 상관없이 공개로 의견을 드렸어요.

<간사>

- 사실 국토계획법상 회의록은 심의가 종결되면 6개월 범위에서 공개하도록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30년이 미경과되어도 10년이 경과된 기록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정보공개매뉴얼에서도 회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소속을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을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자체적으로 비공개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위원>

- 오히려 비공개이기 때문에 소신 발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고 보아야 할지 그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 위원>

- 정보공개 회의록과 관련한 판결문을 보면 발언자 이름이 비공개되어야 소신 발언한다는 내용을 말하고, 그래서 발언자 부분을 비공개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청구를 당한 피고 측에서는 비공개를 해도 특정된다는 입장이에요. 위원 명단은 공개되어 있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할만한 사람인지, 말투 이런 것들이 회의록상으로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발언 내용은 공개하고 발언자 정도까지만 비공개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사례는 대부분 10년 미만의 회의록이에요. 30년이 경과된 기록에 대해서는 비공개될 거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안 들어요.

<○○○ 위원>

- 사실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당연히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서울시 위원회 설치 조례에 보면 대부분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타법에 따라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보니, 소관부서들이 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서울기록원에서 30년이 넘은 것까지 계속해서 비공개를 하도록 두면 안되고, 공개로 결정해야 돼요.

<○○○ 위원>

- 저는 30년 경과 기록은 전체 공개, 30년 미만인 경우 발언자명은 비공개로 의견 드릴게요.

<○○○ 위원>

- 이 사례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법적 쟁송이 발생하면 외부위원 명단

은 100% 공개고, 발언자명에 대한 공개여부는 발언자명단을 비공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차이점은 발언자명을 비공개 하는 경우는 외부위원이 현직위원들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로 비공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언제든지 청구를 통해서 공개가 되면 심리적 부담이나 이해관계 등에 따라서 회의에 적극적인 참여가 어렵 다라는 논리에요. 하지만 지금 기록원의 기록은 30년이 경과한 자료 고 생산 당시 위원들과 현직이 아니고, 도시계획 기록 특성상 사료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발언자명을 비공개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30년이 미경과된 경우 도시계획 사업 자체의 현황과 당시 참여했던 위원이 현직으로 뭘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그 후에 발언자명을 비공개해야 할지 회의록마다 판단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 위원>

- 30년이 경과된 것은 모두 공개를 하고 30년 미경과 기록은 건마다 검토를 해야한다는 의견인가요?

<○○○ 위원>

- 확률적으로는 낮기는 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사안일 수 있어서 검토 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

- 사안의 민감도 등을 고려했을 때 30년 미경과 기록물의 경우에는 발 언자명 정보는 비공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

- 30년 경과와 미경과인 경우 참석위원명단과 발언자명을 공개할 것인가에 대해 각각 의견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 저는 모두 공개하되, 30년 미만의 도시계획위원회 기록 같은 경우 발언자명만 비공개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 저도 ○○○ 의원님과 동일하게 30년 미경과인 경우에 참석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발언자명은 비공개로 의견을 드립니다.

<○○○ 위원>

- 30년 이상은 모두 공개하고, 30년 미만은 사안에 따라 검토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 기록원 내부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위원>

- 일반 회의록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하고는 구분을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회의록은 30년이 경과되면 전체 공개를 하되,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각각 사안별로 검토하는 것처럼 특정 개별 위원회에 대한 사안은 기록물공개심의회에서 사안에 따라 검토하면 될 것 같아요. 안건자료에 있는 국토교통부의 회의록 공개 관련 부분들은 국가 기록원에 이관하기 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회의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 저희 안건에 있는 기록과는 다른 것 같아요.

<○○○ 위원>

- 제가 이해한 바를 말씀드리면 ○○○ 위원님은 30년 경과는 참석위원과 발언자명은 공개고 30년 미경과는 참석위원과 발언자명도 모두 비공개하자는 의견이신가요?

<○○○ 위원>

- 참석위원명단은 공개고, 발언자명만 비공개요.

<○○○ 위원>

- 저도 30년 경과는 참석자명 발언자명 모두 공개고 30년 미경과기록은 참석자 명단은 공개고 발언자명만 비공개로 의견드리겠습니다. 일단 30년이 경과되면 모든 기록이 원칙적으로 공개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업무 수행할 때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

- 이렇게 원칙을 정해놓으면 해당부서가 30년 지난 기록은 공개되는 것이고, 공개 결과에 대해서는 서울기록원에 문의하도록 안내하면 생산 부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서울기록원에서 결정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위원>

- 저도 30년 미만인 경우에만 발언자명을 비공개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위원>

- 공개방식에 대해서도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기록원에서 공개방식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방식으로 제공한 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간사>

- 스캔파일을 제공할 때, 위변조 방지를 위해 비공개 정보 마스킹 후 PDF로 한번 더 저장 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 위원>

- 지난 9월 1차 공개심의회때 열람규정을 만들었는데, 그 규정에 명기 된 거죠?

<김지혜 주무관>

-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 위원>

- 우리가 그렇게 명기를 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 저는 위조의 위험이 있어서 사본제공 시 종이출력물로 제공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렸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위변조를 방지할 방법이 있다고 하니,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은 기록물 제공방식에 대해 청구인이 요청하는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것에 모두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 그러면 두 번째 의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록 공개 범위 재심의를 대해서 30년 경과 기록은 모두 공개, 30년이 미 경과된 기록은 발언자명은 사안에 따라서 비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하

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 전원>

-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 그러면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 간사는 심의의결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결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서명을 받겠습니다.

▶ 폐회

<위원장>

- 오늘 열띤 토론과 좋은 의견으로 2023년 기록물 공개심의회를 잘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차 기록물 공개심의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